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690

발의연월일: 2025. 4. 10.

발 의 자: 김주영·박홍배·이학영

김태선 • 박 정 • 박상혁

이용우 · 허성무 · 양문석

이정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·공유건물, 백화점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 및 인적 피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, 손해보험회사는 그 인수를 거절하지 못하도록하고 있음.

그런데 물류창고의 경우 화재사고의 발생빈도가 최근들어 잦아지고 있고 화재사고 발생 시 물적·인적 피해 규모가 커 보험 가입의 필요 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보험료를 요 구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특약부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특수건물의 대상에 물류창고를 포함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해당화재사고 발생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(안 제2조제3

호).

법률 제 호

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"공동주택"을 "물류창고 · 공동주택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,	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		
3. "특수건물"이란 국유건물ㆍ	3		
공유건물・교육시설・백화점			
·시장·의료시설·흥행장·			
숙박업소・다중이용업소・운			
수시설·공장· <u>공동주택</u> 과 그	- <u>물류창고·공동주택</u>		
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			
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			
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			
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			
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.			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		